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의 경우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未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일반대학은 교원의 확보 범위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되어, 특수 교과·기술전문 경력자로서 초빙교원이 필요함에도 임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확보 범위에 포함 함으로써 원격교육 질 제고와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폐지(현행 제2조제2항 삭제)

- 1)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사이버대학의 교원확보 범위에 초빙교원 추가(안 제6조제4항 개정)

- 1) 일반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됨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교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명예교수”를 “초빙교원, 명예교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겸임교원”을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인가) ① (생 략) ② <u>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u> <u>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u> <u>“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u> <u>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u> <u>되어야 한다.</u> ③ ~ ⑦ (생 략)	제2조(설립인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생 략) ④ <u>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u> <u>명예교수 또는 강사를 둘 수 있</u> <u>다.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u> <u>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u> <u>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u> <u>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u> <u>다.</u> ⑤ · ⑥ (생 략)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초빙교원, 명예교수</u> ----- --. ----- ----- <u>겸임교원 또는 초빙</u> <u>교원</u>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이러닝과	
연 락 처	(044) 203 - 6421